

제283회 임시회
2009. 9. 21(월)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9. 9. 21.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

2. 회부일자 : 2009년 9월 4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9.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동인)

1.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기조성 및 식약청의 식·의약품 업무 지방 이관에 따른 전담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 사무를 신설·이관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실국별 분장사무 신설·이관】

○ 신설(추가)

- 균형발전국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여성국 :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 이관(건설방재국 → 균형발전국)

- 오송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가. 개정취지

이번 제출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조기 조성과 식약청 분장사무중 지방으로 이관하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사무에 대하여 전담할 부서를 지정하는 것으로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설사무의 분장

- 균형발전국은 오송지역을 생명과학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일의 생명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달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됨
- 신설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성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 행정조직과 충청북도 행정조직을 연계할 전 담부서가 필요하고 오송지역을 생명산업단지로 종합·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균형발전국의 분장사무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를 신설하고, 건설방재국의 소관사무중 오송역세권개발, 오송2생명산업 단지를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하여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기에 조성하여 오송지역을 글로벌 의료산업서비스단지 조성하여 지역브랜드로 조성함.

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지방이관사무의 분장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간 중복하였던 식품·의약품안전관리사 무가 지자체로 일원화되고, 그에 따른 인력도 지방으로 이관이 결정됨.

- 도민의 건강에 대한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에 사무를 분장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이 배분된 식품의약품 안전과를 신설하여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할 계획이고,
식의약품 분석에 대한 사무와 인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사무와 인력을 분장함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한 사무분장과 원활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며, 사무에 따른 책임과 권한, 인력을 부여함으로써 활력있는 부서가 됨.

현안사업으로 발생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와 지방으로 이관된 식약청의 식·의약품 사무를 부서의 성격에 맞게 사무를 분장하고 사무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은 부서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단, 건설방재국의 성격에 부합하는 오송역세권개발, 오송2생명산업단지를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6
------------	-----

제출연월일 : 2009년 9월 3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조기 조성 및 식약청 식·의약 품 업무 지방 이관에 따른 전담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 사무를 신설·이관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실국별 분장사무 신설·이관】

- 신설(추가)
 - 균형발전국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여성국 :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 이관 (건설방재국 → 균형발전국)
 - 오송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오송 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0조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밀레니엄타운,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2조 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보건, 의무, 방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3. 위생 및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11.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12.~14. (생략)</u></p>	<p>제9조(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11. (현행과 같음)</p> <p><u>1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u></p> <p><u>13. 오송 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u></p> <p><u>14.~16.(종전의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u></p>
<p>제10조(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10. (생 략)</p> <p><u>11. 오송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밀레니엄타운,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u></p>	<p>제10조(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10. (현행과 같음)</p> <p><u>11. 밀레니엄타운,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u></p>
<p>제12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11. (생 략)</p> <p><u>12. 보건, 의무, 약무, 방역, 정신재활 및 위생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제12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11. (현행과 같음)</p> <p><u>12. 보건, 의무, 방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u></p> <p><u>13. 위생 및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u></p>

관 계 법령 발 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실·국·본 부
서울 특별 시		14개 이내
광역시	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내
도	경기도	18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0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9개 이내

비고 : 실·국·본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국·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